

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5,248,917,891 | 157,467,537 |
| 일반회계 | 4,669,356,020 | 140,080,681 |
| 특별회계 | 579,561,871 | 17,386,856 |
| 기타특별회계 | 579,561,871 | 17,386,856 |
| 소방특별회계 | 202,001,513 | 6,060,045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290,074,288 | 8,702,229 |
|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| 12,715,225 | 381,457 |
|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| 27,755,000 | 832,650 |
|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| 10,176,000 | 305,280 |
|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| 36,839,845 | 1,105,195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088,67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